

교육실습 I(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II(학교현장실습) 안내문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은 2과목/4학점(교육실습 I, II) 이므로 반드시 수료 전 정규등록학기 이내에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 교육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실습 교과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원생은 시기 및 절차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실습 학점체계 : 교육실습I(교육봉사활동/2학점) + 교육실습II(학교현장실습/2학점)

*** 유의사항**

- 교육실습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수료 27학점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한 학기에 수강신청 가능한 정규 6학점에 추가로 수강신청 가능함.
- 해당 교과목은 매 학년도 1학기에만 개설됨.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육실습 이수과정 총괄표

이수학기 입학년도	교육실습I(교육봉사활동/2학점)		교육실습II(학교현장실습/2학점)
	1학기~ 학교현장실습 직전학기	학교현장실습 직전학기	학교현장실습 해당 학기 (3학기생부터 가능)
2009~2010 학년도 입학자	•봉사활동기관 개별 섭외 및 교육봉사활동 실시 (총 60시간)	•교육현장실습학교 개별 섭외 및 교육실습 지도승낙서 제출(9월)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교육봉사활동,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교육실습 I,II) •교육실습비 납부 •학교현장실습 실시(4월, 5월 중 택 1) •교육봉사활동의 성적은 이수 여부 확인 후 S/U로 표기
2011 학년도 이후 입학자		•학기말까지 봉사활동 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12월)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교육봉사활동,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교육실습 I,II) • 포용적교육역량특강(총6강좌) 이수 (구 교육상담특강) •교육실습비 납부 •학교현장실습 실시(4월, 5월 중 택 1) •교육봉사활동의 성적은 이수 여부 확인 후 S/U로 표기

3. 교육실습 I,II 이수 대상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한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취득예정자는 교육실습I(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II(학교현장실습) 모두 이수하여야 함.

입학년도 구분	교육실습I (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II(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60시간)	포용적교육역량특강	
2009 ~ 2010학년도	이수	해당사항없음	이수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이수	이수	이수

※ 교육실습 면제 기준표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	자격종별	표시과목	조건	면제 내용
2008 ~ 2010 입학자	관계없음	관계없음	현직교사	교육실습I, 교육실습II 모두 면제
			현직교사 아닌경우	교육실습I(교육봉사활동) 이수, 교육실습II 면제
2011 학년도 이후 입학자	관계없음	관계없음	현직교사	교육실습I, 교육실습II 모두 면제
	동일종별	관계없음	현직교사 아닌경우	교육실습I(교육봉사활동+포용적교육역량특강) 이수, 교육실습II 면제

*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실습면제신청서”를 해당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면제 처리됨.

** 교육실습II (학교현장실습) 면제된 교육실습I (교육봉사활동) 이수자는 3차 학기 이후 매 학년도 1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등 일체의 서류는 수강 신청하는 직전 학기 12월 말에 제출하여야 함

4. 교육실습I(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수 안내

가. 학점이수체계: 2학점

- 1) 교육실습 I (교육봉사활동)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 포용적교육역량특강(구, 교육상담 특강) 총 6강좌 수강
- 2) 포용적교육역량특강(구, 교육상담특강)은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됨

나. 이수 과정(2019.9.1.일자로 변경된 신규 서식 기준)

	1학기 ~ 학교현장실습 직전학기	학교현장실습 직전학기	학교현장실습 해당 학기 (3학기생부터 가능)
이수 관련 사항	1. 봉사활동기관 개별 섭외 및 교육봉사활동 실시 (총60시간)	1. 학기말 지정기간(12월 중순) 관련 서류 제출	1. 교육실습 I (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II(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교육봉사 서류 제출자에 한함) 2. 포용적교육역량특강(구 교육상담특 강) 온라인 강의 수강 및 과제 제출
제출 서류	【서식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 기관별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서식2】 [교육봉사활동확인서] : 기관별 작성, 지도교사 확인 및 학교장 직인 날인 【서식3】 [교육봉사활동평가서] : 60시간 교육봉사 완료 후 그간의 봉사내역 누가 기록	

다. 수강신청 및 성적

- 1) 수강신청: 학교현장실습 해당학기에 교육실습Ⅰ(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 2과목 동시에 신청
- 2) 성적평가: 교육실습Ⅰ(교육봉사활동)의 성적은 '교육봉사활동 60시간 + 포용적교육역량특강'의 이수 여부 확인 후 S/U로 평가

라. 이수 방법

1) 포용적교육역량특강(구, 교육상담특강) : 매학년도 1학기에 개설

- 가) 이수과정: 포용적교육역량특강(구, 교육상담 특강) 총 6강좌 수강 및 과제 제출
- 나) 이수시기: 학교현장실습 해당 학기 수강
- 다) 강의형태: 온라인 수업
- 라) 신청방법: **ED113 교육실습Ⅰ(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교육실습Ⅰ(교육봉사활동)을 수강 신청한 학생 중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사이버캠퍼스 온라인 강의 수강 가능자격 부여
- 마) 수강방법: 신청학기 내에 사이버캠퍼스에 개설된 온라인 강의 모두 수강
- 바) 평가방법: 온라인 강좌 총 6강좌 100% 이수 및 과제 제출 시에만 이수 인정

2) 교육봉사활동

- 가) 이수과정: 교육봉사활동(총 60시간) 실시
- 나) 이수방법 : 입학 후 봉사활동 기관을 개별 섭외하여 교육봉사활동(총 60시간) 실시
- 다)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학교 :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교육기관
 -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 **전국 사·도 교육청의 유, 초, 중, 고등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 타 법령에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라) 유의사항

- 교육봉사 나가기 전 반드시 교육봉사활동계획서(또는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교육봉사활동 개별섭외 시 섭외기관에서 **공문을 요청할 경우 불입 파일의 공문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됨**
- 봉사활동기관은 2개 이상도 가능하나 2개 이상일 경우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함
- 교육봉사는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인정 가능
- **본인의 전공과목이 아니더라도 교육봉사 조건과 일치하면 과목에 상관없이 교육봉사로 인정됨**
- 2021학년도 2학기 재적생부터 **휴학기간에 활동한 교육봉사도 인정됨**
- 교과목 학습지도, 진로 및 진학·학습·학교 생활에 대한 멘토링, 방과후 교실 지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도 등
순수교육 목적의 무보수 교육 활동만 인정 가능 **단, 봉사기관이 실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내 교통비와
점심 식대(1일 4시간 이상일 경우) 등으로 예외적으로 10,000원/일 내외의 금액을 받을 수도 있음**
- 단순업무 보조, 급식지도, 자습감독, 시험감독, 도서관 장서 정리 등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은 인정 불가
(특히 확인서 내용 작성 시, 이와 같은 활동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능
- 교육봉사활동 실시는 "다)"에 기재된 "학교"급에서만 실시해야 함

봉사활동기관	사전제출서류	제출방법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육봉사활동계획서 *본인서명 반드시 필요 * 메일로 승인회신 (1일-2일 소요)	대표메일gedewha@ewha.ac.kr
비영리기관 (본교에서 인정한 7개 기관만 인정 가능 이 외 기관은 미인정)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신청서 *반드시 기관장 날인을 받고 증빙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심의사항으로 일주일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별도로 통보함	등기우편제출 또는 행정실 제출 *원본이어야 함

5.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 이수 안내

가. 이수시기: 매년 봄학기 4월 또는 5월 중 택1(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2급), 특수학교, 유치원)

나. 이수과정:

학교현장실습 전학기	학교현장실습 해당 학기(3학기생부터 가능)
- 교육실습학교를 개별 섭외하여 교육실습지도승낙서에 해당 학교장 직인 받은 후 행정실로 제출(9월) - 자세한 내용은 여름방학 중 공지사항 확인	- 교육실습 I (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및 교육실습지도 승낙서 제출자에 한함) - 교육실습비 납부 2023학년도 기준 150,000원(실습학교로는 100,000원 송금됨)